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관련부서 : 총 무 과

□ 개정이유

지방교육행정기관 「교육행정정보시스템」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「교육행정정보시스템」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6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은 6명으로 하며,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3조)
-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□ 개정근거
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
-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조직·인력 보강 계획
[교육인적자원부 지교 81413-831('02.12.27)]

□ 개정조례(안) : 붙임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조표 : 붙임
- 관계법령
 -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7조
 -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2조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한시정원은 12명”을 “한시정원은 6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제3조의 한시정원 유효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한시정원)	제3조(한시정원)
<u>한시정원은 12명</u>	<u>한시정원은 6명</u>